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유아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원장 등이 유아의 모집·선발, 유아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작성·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8. 27. ~ 10. 6., 2022. 5. 13. ~ 5. 23.)

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4를 삭제한다.

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로 하고,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(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제19조의2제1항, 제24조제2항,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34조의3(중전의 제34조의2) 제2항 중 “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,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
2.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
제34조의3(중전의 제34조의2)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·선발에 관한 사무 및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: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2.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
④ 유치원의 설립·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
2.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비용 등의 수납에 관한 사무

제34조의2제5항(중전의 제34조의2제4항) 중 “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

보조 등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무
 2.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
- 제34조의4(중전의 제34조의3) 중 “별표 1의2와”를 “별표 1의3과”로 한다.
제36조의2제8호 중 “제34조의3”을 “제34조의4”로, “별표 1의2”를 “별표 1의3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,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, 별표 1의3(중전의 별표 1의2)의 제목 중 “(제34조의3 관련)”을 “(제34조의4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유아교육법 시행령 [별표 1의2]

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(제34조의3 관련)

목적	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
1.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	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
2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	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소득금액증명
3.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	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32조의4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</u> <u>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(제34조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은</u> <u>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	<u><삭 제></u> <u>제34조의2(행정정보의 공동이용)</u> <u>교육부장관 및 교육감(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제19조의2제1항, 제24조제2항,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

제34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(생 략)

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
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
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
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
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
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
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
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유치원의 설립·경영자는 법
제25조에 따른 교육비용 등의
수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
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
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
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
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
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34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다음 각 호의 ---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
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
시행령 제18조제2호-----

-----.

1.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
등에 관한 사무

2.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
유 확인에 관한 사무

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
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
의 모집·선발에 관한 사무
및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의 임용에 관한 사무: 「개인
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
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

<신 설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

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
번호가 포함된 자료

2.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
활기록부의 작성·관리에 관
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
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
관한 사무: 「개인정보 보호
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
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
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
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
록번호가 포함된 자료

④ 유치원의 설립·경영자는 다
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
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
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
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
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
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
교직원 및 강사 등의 임용에
관한 사무

2.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비용
등의 수납에 관한 사무

⑤ -----

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34조의3(행정처분의 세부 기준)
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

----- 다음 각 호의 -----

-----.

1.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무
2.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

<삭 제>

제34조의4(행정처분의 세부 기준)

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<u>별표 1의2</u>와 같다. 제36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1. ~ 7. (생략) 8. <u>제34조의3</u> 및 <u>별표 1의2</u>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: 2022년 1월 1일 9. (생략)	----- ----- <u>별표 1의3과</u> -----. 제36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제34조의4</u> -- <u>별표 1의3</u>----- ----- ----- 9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95